

## 원격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9. 02. 1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원격교육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 및 명칭) ① ‘원격교육’은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를 의미한다.

② ‘원격수업 교과목’이란 중간-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-학습 활동의 70%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.

③ ‘원격수업 콘텐츠’는 원격교육을 위해 교수자에 의해 작성되는 수업 자료를 말하며, 오프라인 수업을 위해 개발된 수업 자료의 단순 디지털화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
제3조(운영조직) ①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격수업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온사람교양교육대학장, 대학교육혁신원장, 이러닝센터장, 전산정보원장 등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하며,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③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원격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2. 원격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
3. 원격교육 표준모델 개발
4. 원격수업 교과목 평가 및 선정
5. 원격수업 개선 시스템 개발 및 연구
6. 기타 원격교육 관련 사항

② 위원회 정례회의는 년 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원격교육 개설자격) 원격교육 개설신청은 본교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원격교육 개설절차 및 방법) ① 각 학과장 및 교원은 ‘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’제13조에 의거 학기별 개설과목 제출 시 원격교육 형태로 운영할 강좌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수강신청 2주일 이전 원격교육 개설 교과목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원격교육 강좌의 요건을 심의하여 확정된 후 교무처에 통보한다. 단, 수강신청 이후 교과목 및 담당교수의

변경이 있는 경우, 위원회는 즉각 심의하여 교무처에 통보한다.

제7조(개설기준) 원격교육은 멀티미디어 콘텐츠(음성, 동영상, 애니메이션 등)를 활용한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교과목 개설제한) ① 본 대학에서 개설할 수 있는 원격교육 교과목 수는 학기별 개설 교과목(전공 및 교양) 학점 수의 20/100 이내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되어 개설된 강좌가, 3년이 경과한 경우 강의 콘텐츠의 1/3이상 업그레이드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9조(책임학점 인정) 원격교육 담당학점에 대한 책임학점의 인정은 부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원격교육 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본 대학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.

② 수강신청 기간은 본 대학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기간에 실시한다.

③ 수강신청 자격은 해당학기 재학생에 한한다.

제11조(원격교육 운영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분반을 하지 않는다.

② 원격교육은 본 대학의 '경동대학교 전산시스템'을 통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K-MOOC 등의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최소 15차시로 한다.

④ 원격교육 강의 콘텐츠의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시간은 최소 25분(1학점 기준)으로 한다. 단, 토론 및 프로젝트 기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의 경우에는 순수 재생시간이 25분 이하로 제작이 가능하되, 15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원격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은 면대면(강의실 진행)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⑥ 원격교육의 성적평가는 오프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업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평가가 가능하되, '경동대학교 전산시스템'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「원격강의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